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2. 10. 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9월 18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9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9. 3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부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시국 소속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사무분장 정비
  - 명칭 변경: 도시재생과 → 주거사업과
  - 주택과, 도시계획과, 도시재생과 간 사무분장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도시국 소관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0조는 도시국 조직(제1항)과 분장사무(제2항)를 규정한 조항으로, 도시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명칭 변경하고, 주택과(제1호) 사무를 주택사업, 시장재건축정비,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하며, 도시계획과(제2호) 사무를 지구단위계획 수립·조정 및 결정 등으로, 도시재생과(제3호) 사무를 재개발·재건축 사업 등으로 조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안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9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부서 담당 업무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부서명칭 변경: 도시재생과 → 주거사업과

나. 부서간 사무분장 정비

- 1) 주택과: 주택사업, 시장재건축정비사업, 도시재생사업, 주거환경개선(관리형)에 관한 사항
- 2) 도시계획과: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정 및 결정
- 3) 도시재생과: 재개발·재건축사업, 가로주택, 소규모재건축·재개발 사업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: 생략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3호: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도시재생과”를 “주거사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주택개량, 도시재개발·재건축”을 “주택사업, 시장재건축정비사업, 도시재생사업, 주거환경개선(관리형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재개발사업(도시정비형), 주거환경개선(관리형) 및 가로주택정비사업”을 “지구단위계획 수립·조정 및 결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”을 “재개발·재건축사업, 가로주택, 소규모재건축, 소규모재개발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도시국) ① 도시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<u>도시재생과</u>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</p> <p>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공동주택관리, <u>주택개량</u>, 도시재개발·재건축, 무허가건축,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2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결정, <u>재개발사업(도시정비형)</u>, <u>주거환경개선(관리형)</u> 및 <u>가로주택정비사업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정비사업</u> 및 <u>도시재생사업</u>,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10조(도시국) ① ----- ----- <u>주거사업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.</p> <p>1. ----- <u>주택사업</u>, <u>시장재건축정비사업</u>, <u>도시재생사업</u>, <u>주거환경개선(관리형)</u>, 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지구단위계획 수립·조정 및 결정</u> ----- -----</p> <p>3. <u>재개발·재건축사업</u>, <u>가로주택</u>, <u>소규모재건축</u>, <u>소규모재개발</u>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